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필례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 번 호 | 18-32 |
|------------|-------|

발의년월일 : 2018. 4. 3.

발의자 : 이필례, 백남환, 신종갑
김영미, 차재홍, 서종수
송병길, 전승학, 강희향

1. 개정이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 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수탁자의 운영 안정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안 제13조제3항)

나.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 “3년”을 삭제하여 최초 위탁기간 5년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제2항)

3. 관계법규 : 『영유아보육법』 등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8. 4. 3. ~ 2018. 4. 9.

나.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재위탁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및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략)</p> <p>③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u>3년</u>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p> <p>④ ~ ⑥ (생 략)</p> <p>제22조(위탁기간)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u>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u></p> | <p>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5년</u> -----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22조(위탁기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u>재위탁 할 수 있다.</u></p> |